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의안 번호	12057
----------	-------

요구연월일 : 2025. 8. 8.

요 구 자 : 문진석 · 김기표 · 김남근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김현정 · 문금주 · 문대림
박상혁 · 박용갑 · 박홍배
백승아 · 오세희 · 윤종균
이기현 · 이성윤 · 이용우
이주희 · 이훈기 · 전진숙
조인철 · 채현일 · 허영
의원(24인)

주 문

국회의원(권성동)을 「국회법」 제155조제1호 및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

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과 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소재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올리고,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 불법자금 수수 및 대선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음.

다. 또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증거를 특검에서 확보해 수사를 받고 있음.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1장 Support”가 적혀 있었고, 현금을 건넨 후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 및 증거와 함께 윤영호 본부장의 아내인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씨가 당시 촬영한 현금상자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함.

라.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권성동이 대선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는 윤석열 대선캠프의 불법성과 윤석열 후보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자 매우 심각한 범죄임.

마.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권성동은 통일교 수뇌부 600억 원어치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수사 정보 전달 의혹과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을 통해 국민의힘 제3차全党대회(23.3.8)의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까지 받고 있음.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무마 및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와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정당법」 제50조) 위반에 해당함.

바. 이렇듯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지녀야 할 청렴과 윤리, 도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품격까지도 심각하게 실추시켰음.

사.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을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호 및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